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준서	051123-*****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0	0	0	0
02월	0	0	0	0
03월	141,800	18,360	0	0
04월	35,450	4,590	0	0
05월	35,450	4,590	0	0
06월	35,450	4,590	0	0
07월	35,450	4,590	0	0
08월	-64,470	-8,380	0	0
09월	0	0	0	0
10월	0	0	0	0
11월	0	0	0	0
12월	0	0	0	0
연말정산	0	0	0	0
합계	219,130	28,340	0	0
총합계				<b>247,470</b>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준서	051123-*****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0
02월	0
03월	9,000
04월	-15,420
05월	9,000
06월	9,000
07월	9,000
08월	7,950
09월	0
10월	0
11월	0
12월	0
<b>합계</b>	<b>28,530</b>

1. 고지금액 :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별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5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준서	051123-*****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0	0
02월	0	0
03월	45,000	0
04월	45,000	0
05월	45,000	0
06월	45,000	0
07월	45,000	0
08월	0	0
09월	0	0
10월	0	0
11월	103,500	0
12월	103,500	0
<b>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b>	0	
<b>추납보험료 납부금액</b>		0
<b>실업크레딧 납부금액</b>		0
<b>합계</b>	432,000	0
<b>총합계</b>		<b>432,000</b>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준서	05112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지출금액계
**3-11-80***	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35,000
**4-67-00***	금*****	일반	2,800
**8-96-00***	핑*****	일반	5,500
**4-19-01***	서*****	일반	45,900
<b>의료비 인별합계금액</b>			<b>54,200</b>
<b>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b>			<b>35,000</b>
<b>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b>			<b>0</b>
<b>인별합계금액</b>			<b>89,200</b>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 신용카드 ]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준서	05112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합계금액
10,574,367	137,900	452,090	284,000	11,448,357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0,574,367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137,9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93,5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문화체육	284,000
신용카드	101-86-61717	(주)KB국민카드	대중교통	258,590
<b>인별합계금액</b>				<b>11,448,357</b>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이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준서	05112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합계금액
3,003,974	95,000	89,100	0	3,188,07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1,025,600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0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중교통	37,800
직불카드 등	527-88-0068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일반	5,500
직불카드 등	527-88-0068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대중교통	4,800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일반	1,964,729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전통시장	95,000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대중교통	46,500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문화체육	0
직불카드 등	120-88-01280	( 주 ) 비바리퍼블리카	일반	8,145
<b>인별합계금액</b>				<b>3,188,074</b>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이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준서	051123-*****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주택임차료	합계금액
405,159	0	209,000	0	0	614,159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

(조회기간 : 2025년 01,02,03,04,05,06,07,08,09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준서	051123-*****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	124,690	81,920	32,490	33,290	405,159
		9,900	26,400	23,489	26,890	
		46,090	0	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0	0	0	0	209,000
		0	0	56,600	65,200	
		87,20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60213-8487998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